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4 선고 2019나35321 판결 [구상금청구소송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심정훈

피고, 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9. 12. 13.

판결 선고 2020. 2. 14.

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0가소1290008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3,567,030원 및 그 중 15,310,332원에 대하여 2002. 3. 29.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피고는 1997. 7. 23.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여받으면서, 피고의 대여금 미상환에 대비하여 원고(흡수합병 전 상호 : D 주식회사)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,000,000원, 보험기간 1997. 7. 14.부터 2005. 11. 13.까지, 피보험자 소외 회사,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과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(1999. 8. 22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연 19%의 각 연체이율 적용)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피고가 소외 회사에 위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여 1998. 10. 24. 보험사고가 발생하자, 원고는 1999. 7. 3. 소외 회사에 보험금 15,994,352원을 지급하였다.

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소1433660호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. 11. 15. 위 법원으로부터 "피고는 원고에게 16,362,440원(=위 보험금 15,994,352원+1999. 8. 22.까지의 지연손해금 368,088원) 및 그 중 15,994,352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선행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00.12. 15. 확정되었다.

위 구상금채권은 2002. 3. 28.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15,310,332원(=위 보험금 15,994,352원-환입액 684,020원)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8,256,698원이 남아 있다.
[인정근거 : 갑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원리금 23,567,030원(=15,310,332원+8,256,698원)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15,310,332원에 대하여 위

기준일 다음날인 2002. 3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을 연 19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위 구상금채권은 위 2002. 3. 29.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효는 10년이 되었는데,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00. 12. 15.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. 7. 9.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위 구상금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선행판결상의 보험증권 번호는 E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보험증권 번호는 F인바, 두 사건은 그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갑3, 7, 9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D 주식회사는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번호 E인 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, 원고는 1999. 1. 5.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위 증권번호를 F로 변경한 사실, 이 사건 선행판결상의 채권과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그 보험금 청구액이 14,356,012원, 보험금 지급일자가 1999. 7. 3., 보험금 지급액이 15,994,352원으로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 사건 선행판결상의 채권과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현석, 판사 이희준, 판사 정원석